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·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명칭 변경(안 제71조제1항, 같은 조 제 2항,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, 안 제7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)

- 1) 중소·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의 명칭을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. ~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중 “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”를 “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는”을 각각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”으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각각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영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이 영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승계한다.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영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③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위나 중소기업유통센터에

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행위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직원은 이 영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임직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⑤ 이 영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의를 이 영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명의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9호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한다.

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5호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한다.

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7항제60호 중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를 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”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중소기업제품·벤처기업 제품 판매회사의 설립·운영)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제품·벤처기업제품의 판 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 (이하 “중소기업유통센터”라 한 다)는 「상법」상 주식회사로 한다.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<u>중소기업 유통센터</u> 의 설립승인을 받으려 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기업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③ <u>중소기업유통센터</u>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④ <u>중소기업유통센터</u> 는 그 매장 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 여 하며,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 니된다. 제72조(협의 및 승인) ①중소벤처	제71조(중소기업제품·벤처기업 제품 판매회사의 설립·운영) ①----- ----- ----- --- “ <u>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</u> ” <u>인</u> ----- ---. ②----- ----- <u>한국중소벤 처기업유통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③ <u>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</u> 은 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④ <u>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</u> 은 - ----- ----- -----. 제72조(협의 및 승인) ①-----

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<u>중소기업유통센터</u>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(생략)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<u>중소기업유통센터</u>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	----- --- <u>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</u> ----- ---.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496